

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0일
신청인 (운영주체)	신청단위 [] 지자체, [] 법인, [] 단체		
	사업장명칭	법인등록번호	
	대표자성명	참여 농가 수	
	주소 (전화번호)		
	(지방자치단체 주관인 경우) 지방자치단체명: 담당부서: 담당 / 직위: 성명: 전화번호:		
변경 내용 (※별지로 작성할 수 있 음)	변경 전	변경 후	

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내용의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서 사본 2.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						
처리절차								
신고서 작성 신고인	→	접수, 검토 농림축산식품부	→	변경 사실 확인 농림축산식품부	→	변경 여부 판정 농림축산식품부	→	변경확인 통보 농림축산식품부